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면적 []조성·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조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재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